

개인소득세법

국 가	베트남
원 법 률 명	Law on Personal Income Tax
제 정	2007.11.21 04/2007/QH12
수 록 자 료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8, pp.89-104
발 행 사 항	국세청, 2008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개인소득세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대 국회 제 10 차 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본 개인 소득세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범위

이 법은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세금 부과 기준 및 방법과 조세감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1.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금액이 있는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2. 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 (a) 1년 혹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 (b)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거소를 둔 개인
3. 비거주자는 2항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과세소득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은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단,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을 제외한다.

1. 사업소득

- (a)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b) 법에 따라 면허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제공하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급여소득

- (a) 급여 및 임금, 기타 급여성격의 수입
- (b) 수당 및 지원금 등, 단, 다음을 제외한다: 특별공로수당, 국방 및 안보 수당, 신체에 위해한 분야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위험수당, 법에 의한 고역 및 지리수당, 산업재해, 직업병, 출생 및 육아 관련 수당, 업무와 관련된 질병보상금, 퇴직급여, 노동법에 따른 실업급여, 기타 사회보장보험 지원금, 범죄예방 지원금 등
- (c) 보상금 등
- (d) 각종 사업협회, 경영위원회, 검열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기타 조직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금액
- (e) 금전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복리후생
- (f) 보너스 단, 다음을 제외한다: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상금,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상과 부상금액,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개발, 발명, 실용신안 등으로 발생하는 상금, 범죄고발에 대한 상금 등

3. 자본소득

- (a) 이자소득
- (b) 배당소득
- (c) 국공채이자소득을 제외한 기타 자본소득

4. 자산양도소득

- (a) 법인 및 기타 사업조직의 지분양도 소득
- (b) 주식양도소득
- (c) 기타 모든 형태의 자본양도소득

5. 부동산양도소득

- (a) 토지사용권 및 건물 양도소득
- (b)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양도 소득
- (c) 토지임차권 혹은 수역권 양도소득
- (d) 기타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받은 모든 물품

6. 기타소득

- (a) 복권당첨금
- (b) 모든 형태의 장려금
- (c) 도박, 카지노 상금
- (d) 경기, 기타 모든 형태의 상금 등

7. 일시재산소득

- (a) 지적재산권의 양도, 사용권리의 제공
- (b) 기술이전 소득

8. 프랜차이즈소득

9. 등기 및 등록이 가능한 주식, 법인 및 기타 사업조직의 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상속으로 인한 소득

10. 등기 및 등록이 가능한 주식, 법인 및 기타 사업조직의 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증여로 인한 소득

제4조 비과세소득

- 1.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간에 부동산 양도소득
- 2.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

3.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한 토지사용권의 가액
4.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자매간에 부동산 상속 혹은 증여소득
5. 농업, 임업, 염전, 축산업 및 농작물재배, 수산업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가계 혹은 개인의 수입
6. 국가가 할당한 농경지의 전환으로 인한 수입
7.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 및 사회보장보험 등에서 나오는 이자
8. 국외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부터 송금되는 외환수입
9. 법에 의한 교대 혹은 정규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받은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10. 사회보장보험 연금
11. 장학금 등
 - (a)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 (b)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구내에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12.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보상금, 산재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수입액
13. 자선,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기금 등에서 수령하는 보조금
14.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 및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외국 자선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제5조 세액의 감면

천재지변, 전쟁, 사고,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 등의 상황에 처한 납세의무자는 부과된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소득금액의 환산

1. 외국통화로 수령한 소득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날에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시장환율에 따라 베트남동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2. 비화폐성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입이 발생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기간

1.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a)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b) 자본소득, 주식양도를 제외한 자산양도소득,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상속 및 증여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각각 과세한다.
 - (c)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시기별 혹은 연간으로 과세한다. 연간 소득계산방식으로 신고를 원하는 자는 매년초 과세당국에 신고방식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제8조 납세관리 및 환급신청

1. 등록, 신고, 납부,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 벌칙, 기타 조세관리는 조세관리법에 따른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 (a)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
- (b) 기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 (c) 기타 관계당국의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제9조 국제조약의 우선

타국과의 국제조세조약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이한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제2장 거주자의 세액계산

제10조 과세소득 및 과세표준의 결정

1.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판매, 임가공, 커미션 수입, 재화의 제조 및 용역의 공급 등 생산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폐적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총수입금액의 발생시점은 재화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혹은 동 재화공급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시기로 한다.
3. 필요경비는 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같다.
 - (a) 종업원에 대한 급여, 임금, 보수 및 기타비용
 - (b) 원재료, 부재료, 연료, 가스 등 제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재화의 원가 및 외주가공비등
 - (c) 제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d) 차입금에 대한 이자

- (e) 일반관리비
 - (f) 법에 의한 조세, 공과금 등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g) 기타 수입창출에 기여하는 비용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법에서 규정된 표준, 기준, 제도 및 원천증빙 서류 및 회계장부에 따라 결정된다.
5. 거주자간의 동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 (a)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b) 동업자간의 소득배분에 대한 합의에 따라
 - (c) 동업자간의 투자금액비율이 없거나 소득배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총 소득을 동업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6. 회계기준의 준수 및 세금계산서 및 기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불가능한 경우 과세당국은 조세관리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업종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소득의 계산

1. 급여소득은 1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법 제3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급여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급여소득을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수령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2조 자본소득의 계산

1. 자본소득은 1과세기간에 법 제3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소득의 총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2. 자본소득의 수입시기는 자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그러한 수입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3조 자산양도소득의 계산

1. 자산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14조 부동산양도소득의 계산

1. 부동산양도소득은 거래시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른다.
 - (a) 양도가액은 양도시점에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한다.
 - (b)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한다.
 - (c) 필요경비는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조세공과 및 토지개발원가, 주택개발비용, 토지성토비, 주택, 건축물, 건물에 대한 투자 및 건설비, 토목원가 및 기타 부동산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를 의미한다.
2.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3. 국가는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서상 기재된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토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 결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지침 및 규정을 둔다.

4. 부동산양도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서상 기재된 양도일 에 따른다.

제15조 기타소득의 계산

1. 상금 등의 기타소득은 각 수입금액별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금액을 의미한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6조 일시재산소득의 계산

1. 일시재산소득은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양도 혹은 사용권의 허여, 기술이전 등으로 수령하는 수입금액으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2.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7조 프랜차이즈소득의 계산

1. 프랜차이즈 소득은 납세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수입금액 중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2. 프랜차이즈소득의 수입시기는 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18조 상속 및 증여소득의 계산

1. 상속 및 증여소득은 건별로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치가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2. 상속 및 증여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 (a)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수령한 시점으로 한다.
 - (b)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수증인이 증여재산을 수령한 시점으로 한다.

제19조 소득공제

1.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바 다음 각호와 같다.
 - (a) 납세자 1인당 월 4,000,000동의 소득공제(연 48,000,000동 한도)
 - (b) 부양가족 1인당 월 1,600,000동의 소득공제
2. 부양가족공제는 납세자 1인당 한번만 공제할 수 있다.
3. 부양가족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 (a) 미성년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 (b) 현재 대학교, 대학, 특수 중학교 혹은 어학과정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직계비속, 신체적장애가 있는 배우자, 고령이거나 신체적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기타 거주자가 직접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가족

제20조 자선기금 등에 대한 기부금공제

1.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선기금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a)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 및 시설에 대한 기부금
 - (b) 자선, 인도단체, 장학재단

2. 1항 각 호에 규정된 단체, 재단, 기금 등은 이윤 추구 목적이 없이 자선 행위를 위해 설립된 단체 및 기금으로 국가가 지정한 것에 한한다.

제21조 과세표준의 계산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과(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은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업종에 따라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직업보험료와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및 기부금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 12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소득, 자산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은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2조 소득별 누진세율

1. 법 제 21조 1항에 규정된 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소득(백만동)	월평균소득(백만동)	세율(%)
1	60이내	5이내	5
2	60 -120	5 -10	10
3	120 -216	10 -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제23조 총소득에 대한 세율

1. 법 제21조 2항에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는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세율(%)
(a) 자본이득	5
(b) 일시재산소득 및 프랜차이즈소득	5
(c) 기타소득	10
(d) 상속 및 증여소득	10
(e) 제13조 1항의 양도소득 제13조 2항의 양도소득	20 0.1
(f) 제14조 1항의 부동산양도소득 제14조 2항의 부동산양도소득	25 2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와 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의무

1. 소득세의 신고, 공제와 납부, 확정신고 등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a)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 공제, 납부 및 확정신고를 대리할 의무가 있다.
 - (b) 납세의무자는 조세관리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신고, 공제, 납부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입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는 1항에 규정된 각 소득에 대한 공제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둔다.

제3장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제25조 사업소득

1.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과세소득은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실비변상비용을 포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만일, 계약서상 개인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와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업소득별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a) 유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
 - (b)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
 - (c) 제조, 건설, 교통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

제26조 급여소득

1. 비거주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2항에 규정된 급여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급여소득은 소득의 지급장소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급여 및 수당을 의미한다.

제27조 자본소득의 계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본투자로서 수령하는 소득금액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8조 자산양도소득의 계산

국내의 법인 등에 투자한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래가 일어난 장소의 국내유무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부동산양도소득의 계산

부동산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 일시재산소득과 프랜차이즈소득의 계산

1.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양도 혹은 사용권의 허여, 기술이전 등으로 수령하는 수입금액으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수입금액으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 기타소득 및 상속증여소득의 소득세 계산

1. 제2항에 규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건별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초과액과 국내에서 10,000,000동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초과액

제32조 과세소득의 수입시기

1. 제25조에 규정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비거주자가 그러한 소득을 수령하거나 재화공급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으로 한다.

2. 제26, 27, 30, 31조에 규정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때 혹은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때를 의미한다.
3. 제28, 29조의 소득은 양도가 실제 일어나는 때를 의미한다.

제33조 소득을 지급하는자와 비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책임

1.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및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비거주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조세관리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적용규정

제34조 시행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2. 이 법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대체한다.
 - (a) 이 법은 2004년 3월 24일 자 법령 14-2004-PL_UBTVQH11에 따라 수정된 2001년 월 19일자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세법령 35-2001-PL-UBTVQH10을 대체한다.
 - (b) 이법은 1999년 12월 21일 자 Law17-1999-QH10으로 수정된 1994년 6월 22일 자 The Law on Land Use Rights Transfer Tax 를 대체한다.
 - (c) 2003년 6월 17일 자 법인세법 No.09-2003-QH11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및 개인기업에 대한 법인세규정을 대체한다.

(d) 기타 이 법에 규정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 모든 규정을 대체한다.

3.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기타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제20조 실행지침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 및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07년 11월 21일 제7대 베트남 국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